##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15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김 윤·서미화·박해철

박희승 • 박지원 • 박홍배

유종오 • 문진석 • 정혜경

이광희 · 문금주 · 전진숙

이개호 • 전종덕 • 강준현

김남근 • 남인순 • 백혜련

이수진 · 장종태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 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 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 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 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 3제3항, 제5조 및 제5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소진료권별로 실태조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을 "지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정한다"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군 보건소와 읍·면의보건지소에"를 "군 보건소,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소진료권의 보건지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단,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소진료권별 공중보건의사의 수급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과목과 소진료권 유형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 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기관과 시설은 지체 없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 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
리 및 실태조사) ①・② (생	리 및 실태조사)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③
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u>실태조사</u> 를	소진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u>권별로 실태조사</u>
야 한다.	<b>.</b>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보건복지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u>지역·기관 또</u>	<u>지역을</u>
<u>는 시설을</u> 정하여 공중보건업	
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단</u> <u>서 신설></u>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 ·기관 또는 시설을 <u>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u>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③ (생 략)

④ 제2항 및 <u>제3항</u>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단,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소진료권별 공중보건의사의 수
급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u>지정한다</u> .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
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제9호
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전문
과목과 소진료권 유형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중보
건의사가 근무할 기관과 시설
은 지체 없이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심의
<u>• 의결한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제4항</u>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 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 지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u>5.</u> (생 략)

<u>⑥</u>
군 보건소,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소진료권의 보건지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u>⑦</u>
<u>제4항</u>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
관 및 배치시설) ①
<b>.</b>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